

<u>보도시점 : 2023. 11. 29.(수) 11:00 이후(11. 30.(목) 조간)</u> / 배포 : 2023. 11. 29.(수)

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

-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… 강우·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-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… 공사관계자 책임·역할도 커져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**강우**, **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** 방안을 담은 **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**(KCS 14 20 10) 개정(안)과 **가이드라인**(안)을 마련하고, 11월 30일(목) 정부세종청사에서 **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** 기준센터와 **한국콘크리트학회** 공동으로 **설명회***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* 주최: 국토교통부, 주관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, 한국콘크리트학회
- □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**발주청**, 학계,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*하며, 집필진이 **표준시방서** 개정(안)과 가이드라인(안) 마련을 추진 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,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.
 - * **발주청**(지방국토관리청·지자체 등), **학계**(한국콘크리트학회·대한건축학회 등), **업계** (건설협회·주택협회·레미콘공업협회 등), **기술자 단체**(건축 및 토목구조기술사회 등)
- □ 한편, 최근 **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**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원장 김병석) 국가건설기준 센터와 함께 학계,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,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.
 -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(안)은 **강우**, **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**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*를 사전, 사후로 구체화하고,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(감리)의 검토·숭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 - * (사전)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 수립(시공자) \rightarrow 책임기술자(감리) 승인 * (사후)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\rightarrow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(시공자)
 - 또한, **가이드라인**(안)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**실제 현장**에서 작동 가능하도록,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*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.
 - * (타설 전)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, (타설 중)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
 - * (타설 후)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(견본)로 압축강도 시험

□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"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"라며, "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,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	책임자	과 장	정승현 (044-201-3561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모 (044-201-3568)
			주무관	한승한 (044-201-3571)
관련 기관	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	책임자	센터장	이영호 (031-910-0734)
		담당자	연구위원	김희석 (031-910-0056)
			연구원	안준혁 (031-910-0531)





참고 1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(안)

□ 추진 배경

- 인천 아파트 **주차장 붕괴**('23.4) 등 건설사고 **주요 원인**이 **콘크리트 압축강도** 부족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**국민적 우려** 및 **지적** 지속
 - ☞ 강우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관계자별 역할, 현장 조치 필요사항 및 책임기술자 검토·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

□ 추진 경위

-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**TF 구성**('23.8)
- 현장 전문가 **간담회** 및 **TF 회의**('23.8~)

□ 주요 내용

- (용어정의 보완)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(현장소장)
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, 책임기술자 정의 구체화
- 「건축법」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감리자,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,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 명확화
- (타설 원칙 정립) **강우**, **강설** 시 콘크리트 **타설**을 **원칙적**으로 금지하되, **적절한 조치** 시 **책임기술자**(감리) **숭인**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
- (유해한 영향 구체화) **강우**, **강설**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**유해한** 영향을 "강도·내구성·표면 불량"으로 구체화
- (사전·사후 조치 제시) 강우, 강설 시 **공사관계자**가 **조치**할 사항을 **타설** 전.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

참고 2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(안)

□ 추진 배경

-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**실제 현장**에서 **작동 가능**하도록 강우, 강설 시 **현장** 조치사항 및 공사관계자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
 - *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TF 회의에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함께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(사전 조치) 레미콘 차량 **빗물 유입 방지조치**, **현장 천막설치** 등 강우, 강설 시 **현장**에서 필요한 **조치사항**에 대한 **구체적 사례** 제시
- (사후 조치)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**현장**과 **동일한 조건**에서 **양생한 공시체**(견본)로 **압축강도시험** 실시
- (기록관리 강화) 강우,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**별도로 콘크리트** 시험·검사 실적을 관리하고, 사전·사후 조치 사항 등 기록 철저
- (공사관계자 역할 강화) 공사현장을 공공(건진법), 일반(건축법), 주택(주택법)
 현장으로 구분 → 책임기술자 및 인·허가관청 등 역할 제시

<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>



<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>



<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>